

제22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2020. 3. 12.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962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0. 2. 28(금)
- 라. 회부일자 : 2020. 3. 2(월)

## 2. 제안이유

다목적문화체육센터(제2체육센터) 개관에 따라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중 사용료 규정을 일부 조정하여, 현실화하여 구민 편익 증진과 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문화체육교실 신규 등록 및 재등록 시 구민을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제3항)
- 나. 부가세를 포함한 상한 금액을 부가세 별도로 한 상한 금액으로 조정함(안 별표)
- 다. 시설 사용료 할인 대상 중 65세 이상의 자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자로 조정함(안 별표)

## 4. 관계법령

- 가. 「지방재정법」 제31조
- 나.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

## 5. 검토의견

### 가. 개정이유

본 개정조례안은, 다목적문화체육센터(제2체육센터) 개관에 따라 사용료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제3호에 따라 부가세를 별도로 부과하여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구민들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2020. 2. 28.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음.

### 나. 주요내용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음.

**표1 개정안 주요내용**

- 문화체육교실 신규 등록 및 재등록 시 구민을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안 제4조제3항
  - 제3항 단서 신설 : 다만, 신규 등록 및 재등록 시 구민을 우선으로 할 수 있는 단서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제3호에 따라 부가세를 포함한 상한 금액을 부가세 별도로 한 상한 금액으로 조정함
  - 별표의 개인사용료 비고란 제1호 중 “포함한”을 “별도로 한”으로 변경하여 개인사용료에 부가세를 별도로 부과

- 시설 사용료 할인 대상 중 65세 이상의 자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자로 조정함.
  - 별표의 개인사용료 비고란 제4호 중 “65세 이상의 자”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자(단, 타 지역 거주자는 해당 사용료의 20% 범위 내 할인)”로 정정

## 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다목적문화체육센터(제2체육센터) 개관에 따라 사용료 감면 대상을 일부 조정하여 구민들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에 따라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현실화 필요에 따라 부가세를 별도로 부과하고자 하는 것임.

금천구 문화체육시설 수강료(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성인기준)는 25개 자치구 중 평균보다 낮으며, 인근 7개구와 비교 시에도 낮게 책정되어 있음.

표2 인근 자치구 사용료 비교

(단 위 : 원)

구 분(성인기준)	금천	양천	강서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	자치구 평균
수영장(월사용료/주3회)	47,000	59,400	69,300	55,000	48,000	55,000	44,110	54,220
체육관(월사용료/주3회)	36,000	56,100	52,800	50,000	-	44,000	28,080	40,810
헬스장(주6회)	47,000	89,100	105,600	50,000	50,000	59,400	46,750	59,500

☞ 금천구 대비 관악구, 노원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중랑구 사용료 낮음

⇒ [붙임] 참고 :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비교(25개 자치구 조례)

금천구 문화체육시설 사용료는 2006년 이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 30.2% 증가 대비 동결 운영 되어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개관에 따른 시설 사용료 현실화가 필요해 보임.

- 문화체육교실 신규 등록 및 재등록 시 구민을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부가세 별도로 한 상한 금액으로 조정, 시설 사용료 할인 대상 중 65세 이상의 자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자로 조정하는 것은 타당해 보임.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첨부 1. 관련 법령 1부.
2.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비교 1부.
  3. 의견제시 사례 1부.

## 지방재정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57호, 2019. 12. 31., 일부개정]

### 제31조(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 4. 1.>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535호, 2019. 2. 12., 일부개정]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6. 2. 17., 2017. 2. 7., 2017. 12. 19., 2018. 2. 13., 2019. 3. 12.>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우편법」 제1조의2 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나.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가. 제35조 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35조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 붙임 2

##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비교(25개 자치구 조례)

(단위 : 원)

구분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주6회, 일잔잔)
	월사용료(주3회)			기본료(1일1회)			월사용료(주3회)			기본료(1일1회)			
	성인	청소년	어린이	성인	청소년	어린이	성인	청소년	어린이	성인	청소년	어린이	
<b>평 균</b>	<b>54,220</b>	<b>36,690</b>	<b>29,140</b>	<b>4,570</b>	<b>3,240</b>	<b>2,390</b>	<b>40,810</b>	<b>31,420</b>	<b>27,150</b>	<b>3,540</b>	<b>2,720</b>	<b>2,180</b>	<b>59,500</b>
1 용 산 구	69,300	55,600	44,400	5,000	4,000	3,000	-	-	-	5,000	3,500	2,500	66,000
2 도 봉 구	69,300	39,600	36,900	7,000	4,000	3,000	-	-	-	-	-	-	-
3 강 서 구	69,300	39,600	29,700	7,040	4,950	3,850	52,800	34,650	29,700	-	-	-	105,600
4 서 초 구	68,000	52,000	45,000	3,300	2,200	1,700	-	-	-	-	-	-	65,000
5 송 파 구	65,000	55,000	45,000	5,500	4,500	3,500	-	-	-	3,000	2,500	2,000	55,000
6 성 북 구	60,000	48,000	36,000	5,000	4,000	3,000	-	-	-	2,500	2,000	1,500	70,000
7 양 천 구	59,400	36,960	30,360	4,400	2,860	2,420	56,100	36,960	30,360	-	-	-	89,100
8 중 구	57,000	57,000	44,000	5,000	5,000	5,000	53,000	53,000	42,000	4,000	4,000	3,500	57,000
9 은 평 구	56,100	39,600	33,000	5,500	4,400	3,300	36,000	30,000	26,000	3,500	3,000	2,500	60,000
10 광 진 구	55,000	39,000	33,000	3,500	2,500	2,000	-	-	-	-	-	-	53,000
11 구 로 구	55,000	45,000	35,000	4,500	3,500	2,500	50,000	40,000	35,000	4,500	3,500	2,500	50,000
12 동 작 구	55,000	36,300	27,500	4,400	3,300	2,750	44,000	28,600	23,100	5,500	3,300	2,750	59,400
13 성 동 구	54,400	40,000	31,200	5,100	3,500	2,700	40,100	29,100	24,200	3,700	2,700	2,300	64,700
14 종 로 구	52,800	39,600	26,400	4,400	3,300	2,200	55,000	49,500	55,000	4,400	4,400	3,850	55,000
15 강 북 구	50,000	37,000	32,000	4,000	3,000	2,000	-	-	-	-	-	-	50,000
16 강 남 구	50,000	-	-	5,000	4,000	-	-	-	-	-	-	-	45,000
17 강 동 구	50,000	-	-	5,000	-	-	-	-	-	4,000	-	-	100,000
18 영등포구	48,000	36,000	30,000	4,000	3,000	2,500	-	-	-	3,000	2,000	1,500	50,000
19 금 천 구	<b>47,000</b>	<b>35,000</b>	<b>27,000</b>	<b>4,700</b>	<b>3,500</b>	<b>2,700</b>	<b>36,000</b>	<b>24,000</b>	<b>20,000</b>	<b>3,600</b>	<b>2,400</b>	<b>2,000</b>	<b>47,000</b>
20 관 약 구	44,110	29,090	22,550	3,410	2,310	1,760	28,050	19,690	16,720	2,200	1,540	1,320	46,750
21 노 원 구	42,730	29,280	21,370	3,550	2,460	1,750	27,290	20,370	17,280	2,100	1,540	1,330	42,730
22 동대문구	42,000	30,000	24,000	3,500	2,500	2,000	-	-	-	-	-	-	45,000
23 서대문구	41,000	31,000	21,000	3,500	2,500	1,700	21,000	16,000	12,000	3,500	2,500	1,700	49,000
24 중 랑 구	40,800	30,000	24,000	3,400	2,500	2,000	26,400	19,200	14,400	2,200	1,600	1,200	43,200
25 마 포 구	-	-	-	-	-	-	60,000	-	-	4,000	3,000	2,500	60,000

※ 강서구, 양천구, 은평구, 강북구, 관악구, 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 : 부가세 별도 (10% 가산하여 표기)

## 붙임 3

## 의견제시 사례 (의견14-0226)

### 문화·체육시설의 사용료 개별기준에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일반기준에서 정한 증액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증액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36조 등 관련)

[의견14-0226, 2014. 10. 24., 서울특별시 중구]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2의 문화·체육시설의 사용료 개별기준에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일반기준에 사용료 증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일반기준의 증액기준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증액할 수 있는지?

#### 【의견】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2에서 규정한 사용료 개별기준에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기준에 사용료 증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일반기준의 증액기준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증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중구 조례”라 한다) 제11조에서는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의 사용자로부터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별표 2 제1호 일반기준의 가목에서는 문화·체육시설의 사용료를 20% 이내에서 구청장이 증·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2호 개별기준에서는 문화·체육시설의 종목별로 세부적인 사용료의 징수기준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중구 문화·체육시설의 사용료 개별기준(별표 2 제2호)에 사용료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 사용료 일반기준(별표 2 제1호가목)의 증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증액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반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개별기준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중구 조례 별표 2의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징수기준에서는 사용료의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일반기준은 모든 유형의 문화·체육시설의 종목에 대한 사용료와 관련하여 일반적이고 개괄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고, 개별기준은 구체적인 체육시설의 종목에 한정하여 개별적이고 일차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산정할 때에는 사용료의 개별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산정하되, 일반기준에서 사용료의 증액 또는 감액 등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 일반기준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사용료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구 조례 별표 2 제2호의 개별기준에 사용료의 상한액을 정한 취지는, 일반기준에서 정한 사용료의 증액규정을 배제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중구청 관내 같은 종목의 문화·체육시설이라도 크기, 시설의 위치나 장비의 종류 등이 다르므로 원칙이나 기준 없이 임의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기준에서 정한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시설의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개별기준의 상한액을 최종적인 금액으로 보아 일반기준의 적용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려는 취지로 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사용료의 개별기준에서 사용료의 상한액을 정하였더라도 일반기준에 사용료 증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1차적으로는 개별기준의 상한액의 범위에서 사용료 금액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일반기준의 증액규정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구 조례 별표 2에서 규정한 사용료 개별기준에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기준에 사용료 증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일반기준의 증액기준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증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